

폭설피해농가의 복구지원 대책 건의안

의안 번호	382
----------	-----

제안년월일 : 2001. 1. 17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1. 주 문

뜻하지 않은 폭설로 큰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복구지원 대책을 요구함.

2. 제안 이유

- 복구지원비의 대부분이 용자 및 자담 위주로 복구 지난
- 재해복구지원기준단가의 과소 책정
- 피해시설 잔재물의 철거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어 농가의 부담 과중

3. 참고 사항

“ 없 음 ”

폭설피해 농가의 복구지원 대책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국회의장, 새천년민주당대표최고위원, 한나라당총재, 자유민주연합총재권한대행,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농림부장관)님께

21세기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고 또한 농가 부채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하여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에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7일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하여 전국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우리도의 피해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하여 관련 농업인들은 깊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도와 시·군 및 유관기관단체에서는 혼연일체가 되어 피해복구에 나서고 예비비를 투입하고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상황이 너무 심각하여 자체복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은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이 재기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피해복구비의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원에, 축산전업농가의 시설물은 농경지와 동일하므로 재해복구 지원기준을 농경지 복구기준과 같이 적용하여 피해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현행 복구지원비율을 보조 20%, 용자 60%, 자담 20%에서 보조 60%, 용자 30%, 자담 10%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피해시설물의 용자금 상환을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은 농업시설은 대부분 이미 용자지원을 받은 시설물로서 기존의 용자금도 상환하지 못한 상태로 용자금의 상환이 지난하므로 금번 시행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상환기간 연기와 금리를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해복구지원의 기준단가를 현실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 화훼분야 자동화 비닐하우스의 설치비용이 평당 90,000원정도 소요되나 시설물 피해시 정부지원단가는 71,870원으로 평당 18,130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피해시설물의 철거비용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시설물이 파이프 등 철구조물로 조립되어 있어 철거장비 부족 등으로 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나 피해시설 잔재물의 철거비용

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어 농가부담이 크므로 철거비용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충청북도 농업인의 뜻을 모아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뜻하지 않은 폭설로 큰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복구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01. 1.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